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교로부터 정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서면의 허가 동의 없이**는 학교, 모든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소유지 또는 어떠한 FCPS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자녀의 과제를 가져와 자녀로 하여금 과제를 마치게 한 후 학교에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는 정학 기간 동안에도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의하기 바랍니다...**

학생의 품행은 현행 규정 2601,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에 있는 자세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안내서의 내용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규정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www.fcps.edu/Directives.shtml](http://www.fcps.edu/Directives.shtml)

- 2150 알코올 및 기타 불법 약물 사용 예방
- 2601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
- 2610 학생들을 학교에서 제거
- 2611 청문회 및 교육위원회로의 항소 절차
- 2616 경찰에 의한 학생 심문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청문 사무처  
8115 Gatehouse Road  
Falls Church, VA 22042

전화번호: 571-423-1280  
팩스: 571-423-1287

2018년 7월 개정

# 학생 징계 청문회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



청문 사무처

# 자녀는 학교기관 교육감과 청문회를 가집니다...

**학교기관 교육감에게 회부된다**는 것은 학생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해 학교장이 징계 조치 패키지를 학교 기관 교육감에게 제출함을 의미하며 청문관은 학생을 학교에 남아있도록 할지, 장기 정학 조치, 재배정 조치를 할지 또는 학생의 퇴학 가능성을 위해 교육위원회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퇴학**은 달력일로 365 일 동안 학교 기관 내의 어느 학교에도 학생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오직 교육위원회만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퇴학 받은 학생에게 퇴학 기간 동안 대안 교육 환경에 출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은 11-45 일 동안 학교 출석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비행이 법이 규정한 무기, 불법 약물,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가혹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 학생은 달력일로 최고 364 일까지의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배정**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거되어 대안 교육 환경으로 배정됨을 뜻합니다.

**입학 거부**는 다른 공립학교 기관 또는 사립학교로부터 30 일 이상의 퇴학 또는 정학을 받은 학생일 경우, FCPS 로의 입학이 거절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왜 청문회를 하는지요?

학교기관 교육감에게 회부 또는 입학 거부나 재배정을 권고받은 학생은 교육감의 청문관(들)과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후에, 여러분은 청문 사무처로부터 결정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청문회에는 누가 참석하는지요?

여러분과 자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건에 대해 자녀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학교의 교장 그리고/또는 교감이 참석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 지원 경관 (SRO)이나 다른 교직원도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문회에 다른 성인들을 대동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사무처 패키지

학교장이 학교기관 교육감에게 회부 내용 또는 권고 내용을 제출할 때, 학교장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학생의 학교 기록 내용도 동봉합니다. 학생은 청문 사무처로 해당 패키지에 대한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는 근무일로 2 일이 걸립니다.

## 청문회 내용 녹음

모든 청문회 내용은 오디오로 녹음됩니다. 청문회 후에 여러분은 오디오 녹음 기록 검토를 위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여러분 개인이 직접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개인 경비로 법정 서기의 참석과 청문회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청문관의 편지는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허용 여부; 다른 정규 학교 또는 대안 학교 프로그램으로의 재배정 여부; 퇴학 가능성을 위한 교육위원회로의 회부 여부에 따라 것입니다. 오직 교육위원회만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입학 거부, 장기 정학, 재배정 또는 퇴학 권고에 대한 청문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해당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청문관의 결정을 통보하는 편지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 자녀의 학업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는 계속하여 과제를 받게 될 것이며 완수한 모든 학교 과제에 대한 학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로부터 10 일 또는 그 이상의 정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 밖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 추가 지원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자녀의 건강과 행복 (well-being)에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 지원이나 정보를 제공해 줄 학교의 사회 복지사, 심리 학자 또는 상담 교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급한 염려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학교에 전화하여 자녀의 상담 교사와의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